

조선말기 蘆沙學派 군정개혁책과 그 의의

김 봉 곤*

1. 머리말
2. 19세기 호남의 군정실태
3. 노사학과 군정개혁책의 내용
4. 노사학과 군정개혁책의 의의와 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의 군정은 사회변동과 함께 극심한 모순을 자아내고 있었다. 군역 자체가 천시되었기 때문에 양인들은 어떻게든 양반신분으로 올라가고자 하였고, 총액제의 실시로 양인들에게 갈수록 군포부담이 늘어났다. 영조 때 균역법 실시로 양인장정에게 1년에 2필 씩 받아오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감하였지만, 군현별로 부세 액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軍丁의 결원이 생겨도 부과된 총액을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군역을 지던 농민이 도망을 치거나 6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죽어도 군현에서는 어떻게든 총액을 마련

* 순천대학교 연구교수

하여 납부해야 했다.¹⁾ 이 때문에 군현별로 총액을 채우기 위해 인징, 족징 등 첩징과 황구침정, 백골징포 등 군정의 모순이 극심하게 전개되었다. 더욱이 신분 상승을 피하는 양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의 양인들에게 군포부담이 과중되었고, 1862년 민란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호남지역도 이러한 모순을 피할 수 없었다. 군정 외에도 환곡, 전정의 모순 또한 극심하여, 1862년 삼남지방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호남에서도 민란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민란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조정의 물음에 대해 당시 성리학자로서 朝野에 명성이 높았던 장성의 蘆沙 奇正鎭(1798~1879)과 기정진의 문인인 무장의 姜寅會(1807~1880), 鄭河源(1827~1902), 고창의 安重燮(1812~1883), 담양의 李最善(1825~1883), 광주 羅燾圭(1826~1885), 기정진의 삼종질인 장성의 奇陽衍(1827~1895) 등 7명이 작성한 三政개혁책이 주목된다.²⁾ 이들은 대체로 184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기정진을 찾아가 수학하였으며, 이최선이나 안중섭은 진사시에, 기양연은 문과에 합격할 정도로 학문에 뛰어난 인물들이었다.³⁾ 특히 이들이 거주한 지역은 삼정의 문란이 극심한 곳이었다. 장성은 都結이나 無名戶에서 돈을 거두어 것에 항거하여 민란이 일어났고, 고창은 吏逋를 백성에게 징수하여 민란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다.⁴⁾ 무장과 담양은 민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고 환곡의 부정이 극심한 지역이었으며, 광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조정에서도 군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 파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정의 문란은 극심하고 군사력은 약화되어갔다. 무언가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본고에서 노사학파의 군정개혁책을 살피려고

1) 金容燮, 「朝鮮後期 軍役制의 動搖와 軍役田」 『東方學誌』 32, 1982, 105쪽.

2) 이들이 작성한 삼정개혁책은 다음과 같다. 奇正鎭, 『蘆沙集』 卷3, 「壬戌擬策」;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安重燮, 『蓮上集』 卷6, 「三政策」;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羅燾圭, 『德巖漫錄』 卷7, 「三政策」; 奇陽衍, 『柏石軒遺集』 卷1, 「三政策」; 鄭河源, 『小蠹集』 卷3, 「壬戌擬策」 등이다.

3) 金봉곤, 「蘆沙學派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대학원, 2007, 196~197쪽.

4)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研究』, 서울대출판부, 2002, 90쪽.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왜란 이래 일본군과 맞서 싸운 뿌리 깊은 전통을 갖고 있다. 조선조 말인 1896년, 그리고 1905년과 1910년 사이에도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들이 일어나 맞서 싸웠다. 따라서 조선조 말 다시 재기된 전쟁에 1862년과 1866년 제출된 호남 지역 지식인들의 군정개혁안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지역 군정 개혁에 관해서는 김용섭이나 양진석 등이 기정진에 관하여 소개한 이후,⁵⁾ 고영진이 노사학파의 개혁론을 검토하면서 기정진과 기양연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다.⁶⁾ 따라서 아직까지 호남지역 군정의 실태나 개혁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남지역에 파견된 암행어사가 올린 서계와 별단, 기정진과 그의 문인들을 비롯한 호남지역 지식인들이 제출한 삼정책을 통해 군정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 1862년 기정진과 그의 문인들이 제출한 삼정책과 1866년 기정진이 올린 병인소를 분석하여 군정개혁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어 이러한 군정개혁책의 의의와 한계는 어디에 있으며, 1896년과 1907년 일제에 맞서 의병운동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5) 김용섭은 기정진에 대해서 군포와 환곡을 폐지하고 조용조의 세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고 소개하고, 기정진의 세제개혁론은 신분 관계에 따르는 부세불균의 문제를 시정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金容燮, 「哲宗朝의 應旨三政疏와 「三政釐正策」,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研究(上)』, 一潮閣, 1988. 520쪽) 양진석의 경우도 김용섭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다.(양진석, 「삼정개혁론의 전개」, 『조선후기의 정치』,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353~354쪽)

6) 고영진은 노사학파의 군정개혁에 관해 기정진의 군포폐지와 기양연의 호포제 실시를 언급하였다.(고영진, 「奇正鎮學派의 學統과 思想的 特徵」, 『大東文化研究』 39, 2001. 215~219쪽)

2. 19세기 호남의 군정실태

호남지역은 균역법 실시 이후로도 군정의 문란은 여전하였다. 군현마다 각종 명목으로 탈역이 진행되어 총액제하에서 균액을 채우기 위한 첩징이 잇달았던 것이다. 예컨대 정조 19년(1795)에 湖南暗行御史 鄭晚錫이 아뢴 서계에서도 호남의 각 지역은 邑屬의 保 등 각종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탈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稷房村、願堂村이라고 하여 官家에 소속되거나 鄉廳에 소속되어 온 촌락이 균역을 면제받거나 요호의 군정이 균역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⁷⁾

19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군정의 폐단은 더욱 극심해졌다. 1802년 6월 2일 全羅左道御史 張錫胤은 別單을 올려 요호의 군정이 균역에서 빠져나가므로 잔약한 백성들에게 첩역의 폐단이 일어나므로, 향교나 서원의 생도, 각 질청의 보속, 계방촌을 일체 혁파하여 잡다한 탈역에 보충하자고 하였다.⁸⁾ 이러한 상황은 전라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기인 1802년 全羅右道御史 鄭來百 역시 別單을 통해 교생이나 원생, 각종 명목으로 피역하고 있어서 군정이 배나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⁹⁾ 예컨대 1808년 6월, 여산의 경우에는 元戶 4,159호 중에서 유망자와 세대가 끊긴 絶戶, 면제된 자들을 제외하면 實戶는 1,225호에 불과하여 한 호에서 부담해야 할

7) 『正祖實錄』 卷 42, 正祖 19년 5월 22일, 「湖南暗行御史鄭晚錫復命進書啓」, “一, 良役之弊, 如營匠保, 邑匠保, 四色保, 三色保, 竹保, 漆保, 紙保, 鄉保, 吏保, 通引保之類, 指不勝屈, 而皆是刊冊外濫定, 此宜一一矯革 一, 湖南一道, 邑各有稷房村、願堂村, 或屬官家, 或屬鄉廳, 每年納錢, 舉村鑄役, 饒戶健丁, 沒身閑逸, 此宜一切革罷, 并充軍簿 湖南一道, 邑各有稷房村, 願堂村, 或屬官家, 或屬鄉廳, 每年納錢, 舉村鑄役, 饒戶健丁, 沒身閑逸, 此宜一切革罷, 并充軍簿”

8) 『日省錄』 純祖 2년(1802) 6월 2일, 「備局以全羅左道御史張錫胤別單覆啓」, “備邊司啓言因全羅左道暗行御史 張錫胤別單有草記回啓之命矣 取見其別單 則其一軍政闕額簽代之際 饒戶實丁給錢避役 貧殘之氓 舉被偏苦 黃白疊役之弊 無邑無之 校院生徒 各廳保屬 稷坊村里 一併革罷 充補雜頭事也 軍政一事 實爲難支之瘼 更加嚴飭 隨宜蠶革 切勿因循 使窮民獲保”

9) 『日省錄』 純祖 2년 6월 8일, 「備局以全羅右道御史 鄭來百別單覆啓」, “其一 校院生自有定數 而近來奸民 多有避役投托 幕入名色 亦甚夥然 軍政倍難 令道臣查出汰定於良役事也 校院生及各樣募率之濫屬者 汰定良役之意 向因儒賢疏 以爲覆啓行會”

군정이 4명에 이르게 되니, 황구첨정, 백골정포, 첩역의 군정의 문란함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읍 전체가 피폐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

호남지역은 군정은 순조 9년과 10년의 가뭄으로 더욱 피폐해졌다. 순조 15년 전라감사 金啓濫은 순조 9년과 10년의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도망쳐서 1백 호에 2, 3호가 남기도 하고 혹은 5, 60호에 3, 4호가 남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한 면(面) 전체가 10호도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軍伍가 줄어들어 양반과 상민을 모두 거두어 모아도 호구 숫자와 비교할 때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관아의 衙前이나 將校, 官奴·使令 등을 총동원하고, 儒生이나 鄉任들까지 모두 긁어모아도 군역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고을에서는 군오를 簽代하기 위해 隣徵, 族徵을 행하고, 겨울철에 番布를 독촉하여 징수하니 집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쓰러져 죽은 자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상황은 그 뒤로도 나아지지 않았다. 순조 16년의 호남 암행어사 趙萬永,¹²⁾ 순조 22년 전라우도 암행어사 權敦仁¹³⁾과 전라좌도 암행어사 沈英錫은 호남지역 군정의 문란한 실태를 잇달아 보고하였다. 특히 심영석은 호남지역에 새로 등장한 契房¹⁴⁾의 폐단을 보고하였다. 계방은 군역과 관련

10) 『日省錄』 純祖 8年 6月 17日, 「湖南右道暗行御史 徐有望進書啓別單」 “就以本道言之 逃故黃白疊役之寃徵 幾乎無邑無之未有如礪山一邑之尤甚 竊稽本邑帳付元戶四千一百五十九戶內 除流亡絕戶一千五百七十八 見在實戶 合爲二千五百八十一 而其中免役之戶爲一千三百五十六 則應役之戶不過一千二百二十五 而京外軍總合爲四千五十一名 以四千五十一名之軍額 分排於一千二百二十五戶 則一戶所出之丁幾至四名 係是行不得之政 黃白疊役之徵勢所必至 以此之故 民不奠居散而之四者 項背相望膏腴之地居多陳荒 戶口日以減縮 軍額益難充補 若此不已則將至邑不爲邑”

11) 『純祖實錄』 18권, 순조 15년 10월 12일.

12) 『日省錄』 純祖 6年 6月 10日, 「湖南暗行御史 趙萬永進書啓別單」

13) 『日省錄』 純祖 22年 7月 9日, 「全羅右道暗行御史 權敦仁進書啓別單」

14) 계방은 18세기 이후 군역법 실시로 지방관청의 隱餘結稅, 漁鹽船稅가 중앙관청에 급대되고, 대동세의 地方留置米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지방관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부유한 戶나 里, 門中이나 사찰을 대상으로 이서들의 作奸에 의해 설치되었다. 계방은 이서들에게 일정한 전물을 납부한 대신 군역을 기본적으로 면제받았고, 환곡, 잡역, 결역 등에 대해서도 점차 면제되었다. (金炯基, 조선후기 契房의 운영과 부세수취, 『韓國史研究』 82, 1993, 143~145쪽) 송양섭은 이러한 계방의 출현은 재정의 중앙일원화 시책과 비총제의 실시, 養戶의 관행 내지 지방재정 확보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계방이 군역면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고 주장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환곡이나 刷價, 民庫, 각종 공물 등에서 제외되고 심지어는 살인자나 호적을 감추는 수단으로 전락되었으며, 아전뿐만 아니라 관아나 군영까지 확대되어 호남 일대에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군정의 문란은 현종 대나 철종 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종 8년 8월 10일 全羅左道暗行御史 李宗秉의 보고¹⁶⁾나 同年 8月 17日 全羅右道暗行御史 趙龜夏의 보고,¹⁷⁾ 철종 5년 윤7월 13일 湖南左道御史 趙憲燮과 右道御史朴麟夏의 別單,¹⁸⁾ 철종13년 7월 2일 全羅左道三邑暗行御史 金元性的 보고¹⁹⁾에서도 연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종병은 기근 때문에 군충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 첩징이 잇달고 있는데도, 요호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괴역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하였다. 즉 군역을 채우기 위해 죽은 자에게 걷는 白骨徵布, 어린 아이를 군정으로 등록하는 黃口添丁, 면에서 부족하다고 걷는 面徵, 마을에서 부족하다고 걷는 里徵, 친족들에게 부족하다고 걷는 族徵 등 疊徵이 잇달고 있는데,²⁰⁾ 요호들은 楔防이나 邑屬의 保率, 향청의 鄉任의 명목으로 괴역하고 있으며, 阜隸와 같은 친한 자들도 향청의 鄉任을 맡으

하였다. (송양섭, 「조선 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 『역사와 담론』 59집, 2011 34~35쪽)

15) 『日省錄』 純祖 22년 7月 19日, 「全羅左道暗行御史沈英錫進書啓別單」, “一 契防事則契防之弊 前後繙啓已多論列 在前則契防所免 只是軍簽一事而已 故其所說弊 皆主軍簽 今也不然 還上免焉 刷價免焉 民庫之斂免焉 漂船之斂免焉 貢竹之斂免焉 殺獄匿焉 戶籍減焉 一言以蔽曰 以國之民 移爲吏物 私作湯沐 食其徭賦 在前則一邑之內 極不過二三村 作契 秘之諱之 惟恐官知 今也 則凡四境之內 饒實之村 悉爲契防無一遺者 吏廳之契數十 校廳之契七八 鄉廳奴廳刑房廳書員廳通引廳使令廳 各不下數三 甚則有所謂官契防 或取一面 或取數里 官與爲契 或受綿絮 數百斤 或受鰓蛤數百斗 乃照吏契 一塵不侵 兵營水營 乃於營四里 劃定之外 攬取本官所轄 或結之爲契防 或收之爲役屬 以其威稜脅制本邑營契之牢固 勝於邑契 故投託相續 便作逋逃之藪”

16) 『日省錄』 憲宗 8年 8月 10日, 「全羅左道暗行御史李宗秉進書啓別單」

17) 『日省錄』 憲宗 8年 8月 10日, 「全羅右道暗行御史趙龜夏進書啓別單」

18) 『日省錄』 哲宗 5年 윤7月 13日, 「備邊司以湖南左道御史趙憲燮右道御史朴麟夏別單回啓」

19) 『日省錄』 哲宗 13年 7月 2日, 「全羅左道三邑暗行御史 金元性進書啓別單」

20) 『日省錄』 憲宗 8年 8月 10日 全羅左道暗行御史 李宗秉進書啓別單, “軍丁之弊 以民總言之 則饑饉之餘 死亡殆盡 以今比昔 十無三四 而吏緣其間 有白骨之役 有黃口之侵 有面徵里徵 族徵 疊徵焉”

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나 형제, 숙질 심지어는 족속들까지 군오에서 면제된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²¹⁾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종병은 군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계방의 保率을 혁파하고, 상민과 천민으로서 향임에 오른 자는 군오로 환부하고 향직을 파는 자들은 뇌물을 받은 죄로 엄히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²²⁾

이처럼 19세기 호남 지역은 양인층의 신분상승과 군총제의 실시로 군정이 문란해져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자는 稷防이나 邑屬의 保率, 향청의 鄉任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빈곤층에게 황구침정이나 백골징포, 첩역이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암행어사들은 이러한 군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를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액제하에서 이러한 군정의 모순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더욱이 군사력의 약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군정의 문란한 실태에 대해서는 지방관이나 암행어사뿐만 아니라 노사학파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지식인 역시 피역과 첩정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정진의 문인인 안중섭은 숙종대의 良軍收布 30만필에서 30만필에서 30만필에 京營納 외에 巡營·兵營軍의 本色 除番軍, 諸廳·諸鎮의 移募軍, 學宮·書院의 漏戶 烟臺의 保率軍, 營匠·邑匠保, 四色·三色保, 竹保, 柒保, 紙保 등 지방에 납부해야 할 허다한 명목이 늘어났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1814년과 1815년 흉년으로 고을이 텅 비었는데도 군포를 총액제로 징수하니 백골, 황구 침정, 족정, 인정의 폐단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²³⁾ 이최선

21) 같은 글, “駕矣饒戶 哀此貧民 今之軍丁 免之者衆 應之者少 各聽稷防而免於是 邑屬保率而免於是 且本道鄉所之納賂圖差 爲一大弊 雖卑隸賤品 一經鄉任 則非但其身之免於軍伍 其子其孫弟兄叔侄以至族屬 莫不圖免 故家力之稍饒者 已無可言 而其所應役者 不過是貧賤無告之民也”

22) 같은 글, “爲今之計 稷防保率 一併革罷 而至於鄉任 則常賤之已陞者還付軍伍 後日之以賣鄉現發者 一併重勸施以贓律之意 使道臣嚴飭列邑令廟堂稟處”

23) 安重燮, 『蓮上集』 卷 6, 「三政策」, “臣竊觀肅廟初良軍收布 不過三十萬 英廟朝均役時 良役實總至五十萬 大邑或數萬 小縣亦一千減布變通之典 式至今爲輿人之誦矣 第其京兵營納外 巡營

또한 피역과 첩징, 서원의 피역, 계방을 통한 관에서의 모리행위 등에 대해서 비판하였다.²⁴⁾ 나도규 역시 모칭유학이나, 투탁한 한징, 契房 등의 명목으로 각종 부당하게 除役되는 것 때문에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황구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의 폐단이 일어나고,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면제되어야 할 장정이 면제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였다.²⁵⁾

또한 노사학과에서는 이러한 피역과 첩징이 문벌중시의 풍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군정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기정진은 군적에서 빠진 軍丁을 찾아 내어도 곧바로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가듯 군적에서 빠지는 것은²⁶⁾ 문벌을 숭상하는 國俗때문에 군적에 들어가면 사족으로 끼워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잔약한 농민들에게 부담이 몰려 백골징포나 황구침정 등 첩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²⁷⁾ 이최선도 기정진과 마찬가지로 군역을 지는 경우 사족으로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군적에서 빠지려고 한다고 하였다.²⁸⁾ 이미 군적에 들어가면 빠져나간 사람들

兵營軍本色除番軍 諸廳諸鎮移募軍 學宮書院浦戶 煙臺保率軍 營匠邑匠保 四色·三色保 竹保·漆保·紙保等 奇怪名色 千百頭緒 則臣未知今日又增幾十萬也 且在乙甲之大無也 餓殍相藉 流亡相續 吁嗟 軍民所惡者 役名也 所憚者 番布也 東漂西泊 十空九家 問其族屬 族屬無 問其洞里 洞里無 自是而尺籍虛 戶布生 家爲重役 人各重番 而歲納之木價何增 京納之情債何多 所謂該吏徒攤鬼簿 白骨填代 比年責納 虛名之老除 式年抄出 以白骨代白骨 以虛名填虛名”

24)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各院奴隸之威脅小民 而小民則畏院奴如猛獸 果院奴之威多於國家之軍卒歟 各邑大村 名之以契房而私斂契房之民 果各邑之所劃歟 冗費出於番 官廩加於番 秦求無已 楚劍不利 軍政固甚於田政”

25) 羅燾圭, 『德巖漫錄』 卷 7, 「三政策」, “探撫軍籍爲弊之本 則黃口充丁而壯丁閒遊 白骨懲役而生者圖免 久而爲無亡於其間 則遠戚疎族之徵納 視作恒典 誣而錄虛名於其里 則近閭同隣之責推 已成大弊……冒稱之幼學大是遐陬之弊病 而不惟爲害於軍丁 亦不無名分壞了之歎 投托之閒丁 實是鄉閭之惡習 而不直有妨於丁簽 寔難保奸竇做來之弊 不緊之契房多 而緊切之軍多失於契房 不當之除役番 而當疤之丁 未及於除役 或有查丁之勅 而實歸於討索之橐 間有點伍之律 而難免乎舞弊之權 是乃小民之難支也”

26) 奇正鎮,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蓋論軍弊者必曰搜括 而搜括之舉 例不免縱魚漏網 故朝填而暮闕 所得者騷動而已”

27) 같은 글, “蓋有軍則必有籍 軍之有籍 夫誰曰不可 而不幸收布之例一立 則是籍也乃一部不準書 非軍籍也 況我國俗尚鬥地 一入軍籍則不齒土族 今也既欲其軍 兼責其財 尺籍之虛 因其勢也 兵部之籍 雖有原總 營邑雜色 額外加增 昨闕未填 新簽又滋 魚鱗累積 莫可爬櫛 黃壤抱冤 赤子祝死 備不虞之意安 在此軍籍失養民之義者也”

28)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收布代番 徒攤虛簿 死亡流離 黃白簽案 ……且國俗尚鬥地 一入軍籍 不齒於土族 宜其尺籍之爲虛漏矣”

때문에 부담해야 할 군역이 3, 4배에서 6, 7배에 이르니,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은 처자식을 팔고 생이별을 하기에 이른다고 하였다.²⁹⁾

기정진이나 그의 문인들 외에도 1865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던 보성 지역의李志容(1825~1891)³⁰⁾이 호남지역에서 院村, 冒稱幼學, 契房이나 保率 등의 명목으로 요호들이 군역에서 빠지는 것을 비판하였고,³¹⁾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참관을 지냈던 동북의 閔胄顯(1808~1882)³²⁾도 유학을 모칭하는 자들이 줄을 짓고, 無亡戶가 군적에 그대로 등록되니, 군향은 그림의 떡이고, 무기는 녹슬어서 위급할 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³³⁾

3. 노사학과 군정개혁책의 내용

이처럼 19세기 호남 지역은 양인층의 신분상승과 군총제의 실시로 군정이 갈수록 문란해져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곳은 稷防이나 邑屬의 保率, 향청의 鄉任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빈곤층에게 황구침정이나 백골징포, 첩역이 몰리고 있었다. 노사학과에서는 이러한 군포징수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부당하게 부과된 군역을 조사하여 군적을 바로잡자고 주장하였다. 기양연은 閒丁을 추쇄하고, 황구나 백골이 군적에 들어간 자는 모두 없애며, 이서들이 농간을 부리면 법에 따라서 論罪하자고 하였다.³⁴⁾ 나도규 역

29)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一身之役 或至三四 一名之代 或至六七 疲瘵殘疾 惴獨鰥寡 哀此無告而籲天無門 生離死別 賣身鬻子 號聲如雷 而和氣頓無”

30) 이지용은 보성출신으로서 고종 2년(1865) 실시한 式年試에서 진사 3등 59위로 합격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31) 李志容, 『小松遺稿』 卷 6, 「壬戌擬策」

32) 민주현은 동북 출신으로서 철종 2년(1851) 실시한 庭試에서 병과 8위로 급제하였다. 병조참관과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33) 閔胄顯, 『沙涯集』 卷 3, 「三政對策」 哲宗壬戌六月, “軍籍則幼學之冒稱 項背相望 無亡之仍錄 村里盡然 所謂餉簿有同畫餅 諸般器械 無異鉛刀 一朝緩急 其可需用乎”

34) 奇陽衍, 『柏石軒遺集』 卷 1, 「三政策」, “於是遂令郡邑漸刷閒丁以充軍額 悉破旅外以補正軍 以黃口白骨之尙載軍籍者 學皆抹去 使無冤徵 其或吏胥弄奸依舊冤徵者 依法論罪 則不出

시 읍리에서 피역자들을 관청에 알리도록 해서 추쇄하고, 계방이나 부당하게 除役되는 경우를 금지하자고 하였다.³⁵⁾ 안중섭 역시 속오군이나 수성군 외에는 군적에 편성하지 말며, 京營納 외에 잡색군 명목을 혁파하자고 주장하였다.³⁶⁾ 이최선도 군역을 반포하여 농간이 일어난 단서를 조사하고 실제 수에 근거하여 징수하자고 하였다.³⁷⁾

이어 노사학과에서는 군병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은 도리상 옳지 못하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호포제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기정진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外侮를 막기 위하는 것인데 收布를 하기 위해서 군을 등록시킨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³⁸⁾ 외적이 쳐들어오면 중앙군 외에 지방군의 힘을 빌어야 할 텐데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포를 바치게 하여 굶주리고 춥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³⁹⁾ 이러한 기정진의 견해는 그의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기양연은 군병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은 인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서⁴⁰⁾, 군포를 없애지 않으면 도망치는 자는 여전할 것이고, 탐욕스런 기풍 때문에 조사하는 자가 여전히 뇌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⁴¹⁾ 강인회도 三軍營, 즉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의 正兵들이 수 십년간 番上하지 않고 列邑에서 보인과 함께 군포를 걷는 것이 부득이한 정사냐고 비판하였

十年 民生可保 軍額可充矣”

35) 羅壽圭, 『德巖漫錄』 卷 7, 「三政策」, “刷之冒稱 查其投托 則自有填充之道 而某也冒稱 某也投托 已是邑里之詳 何混淆之有也 以臣之愚 撤之襍防 禁其除役 則大是充丁之一種良策也”

36) 安重燮, 『蓮上集』 卷 6, 「三政策」, “一則束伍守城軍外 悉去編籍之法 更新前日之議 則上不損國 下無偏徵矣 二則京營納外雜色軍名一切查罷 則可以充軍籍減民瘼矣”

37)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先頒騎省之額數 嚴查幻弄之端由 則民間之加出 當無數矣 只徵實數 則黃口之虛籍可減矣”

38) 奇正鎮,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臣聞養兵以禦侮矣 未聞爲收布而簽軍也”

39) 같은 글, “假令今日外夷有覬覦者 則禦侮折衝 京營兵可獨辦乎 必將藉手於坊曲之兵 夫欲使彼以血肉扞鋒鏑 性命易賊首 而先使納布以饑寒之者人情乎”

40) 奇陽衍, 『柏石軒遺集』 卷 1, 「三政策」, “自國初 古人有言 曰農出財穀以養兵 兵出性命以衛農 今乃將使出財而先使出財而困苦而飢寒之者 是果人情乎 名本不正 臣所未曉”

41) 같은 글, “夫軍額多闕 簿牒既虛 則孰不知查丁之爲急務 而軍布不除 則雖欲新簽而新簽者亦必逃竄矣 貧風不革 則縱使查括而查括者 必開賂路矣”

다.⁴²⁾ 正兵에게 收布하는 것은 이미 양병하는 本意를 잃은 것이며, 군병에게 性命을 요구하면서 재물을 내라고 하여 고달프고 추위에 떨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⁴³⁾ 이최선도 각 역의 마필에도 料田이 있는데 각 읍의 군졸에게는 한 푼의 돈이나 쌀도 주지 않으니 이는 가축을 중시하고 사람을 천시하는 것으로서 군인도 없는데 마필을 홀로 쓸 수 있는 것이냐고 비난하였다.⁴⁴⁾

이에 노사학과에서는 정병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대신 신분에 관계없이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하는 호포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호포제를 실시하면 군적에 들어있는 자들이 재물을 내는 고통이 없고 생활을 꾸려 갈 수 있어서 도망가거나 숨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므로,⁴⁵⁾ 군액을 채우고 군사력을 강화시킬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기정진은 조용조 세제를 주장하면서,⁴⁶⁾ 국초에 양반에게도 수포하였고, 唐의 戶調도 사족들에게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⁴⁷⁾ 신분에 관계없이 호포제 실시를 주장하였

42)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三營正兵 逐年上番 臣猶未見於數十年之前 則列邑正保 混歸收布 無乃近日迫不得已之政乎”; 이현수는 18세기 말 홍산현의 군비실태에 대해 兵曹에 소속된 정군으로 騎兵, 步兵, 그리고 別奇兵이 있었는데, 기병의 경우 배정된 284명 중 실제 번상하는 기병은 9명이며, 27명은 資保이며, 나머지 248명은 매년 수포하는 보인과 같은 존재라고 파악하였다. 보병이나 별기병 역시 보인과 같이 돈을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이현수, 『鴻山縣監 解由文書를 통해 본 18세기말 忠淸道 鴻山縣의 軍備實態』, 『고문서연구』 23, 147쪽)

43) 같은 글, “況正兵收布 已失養兵之本意 農以養兵 兵以衛農 卽農兵之所以相資 而今也將責其出性命於兵 而先使出財以困苦而飢寒之者 是果人情乎”

44)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各驛馬匹猶有料田 而各邑軍卒無分錢一粒之饑 貴蓄而賤人歟 抑軍不如馬耶 無其軍而以馬獨用歟”

45) 奇陽衍, 『柏石軒遺集』 卷 1, 「三政策」, “戶布既行而軍布既除 則入軍籍者 無出財之苦 有資生之業 而逃竄之弊矯矣”

46) 奇正鎮, 『蘆沙集』 卷3, 「壬戌擬策」, “臣聞之 唐之租庸調 在後世賦民 最爲詳審 伏願殿下命大臣重臣 討論而潤色之 舉而行之”; 右尹 朴權이 숙종 37년 양역변통을 논의하면서 “戶布는 唐의 租庸調 가운데의 調役입니다. 이제 만약 九等の 制度를 設定하여 가난한 이와 잘 사는 이가 納付하는 것이 꼭 들어맞게 하면 民役을 균등하게 할 수 있고 國用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肅宗實錄』 50卷, 肅宗 37年 7月 5日 壬辰, 右尹朴權曰: “戶布, 卽唐租庸調中調役也 今若設爲九等之制, 貧富所納適中, 則民役可均, 國用可支”)

47) 같은 글, “此法之行 東國之名兩班者必多異說 然而此有片言可折者 定鼎之初 幾歲幾年 計戶收布 迺家先祖父固嘗供之 彼獨何人哉 唐之戶調 未聞土族獨免 不可許也”

다.⁴⁸⁾ 이러한 기정진의 견해는 그의 문인들에게 계승되어졌다.

기양연은 호포를 조용조 가운데 庸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토지가 있으면 租가 있고, 戶가 있으면 庸이 있다고 하고서, 호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양반들이 저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⁴⁹⁾ 기양연은 漢 나라의 司隸校尉의 자제들도 면제하지 않았는데 어찌 양반이라고 면제할 수 있냐고 비판하고, 戶布를 실시하고 軍포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이다.⁵⁰⁾

강인회 역시 호포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兵部에서 正兵의 원액을 조사한 다음 호를 계산하고 軍포를 균등하게 부과하여 養兵할 도구를 삼고, 각읍의 雜保를 없애자는 것이다.⁵¹⁾ 이렇게 하면 양반들이 반대할 것이나 국초에 양반에게도 수포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허락하지 말자는 것이다.⁵²⁾ 이최선도 해당 읍의 結戶를 헤아려서 正兵을 내고 收布하게 되면 軍병도 튼튼해지고 수포도 넉넉히 할 수 있어서 兵을 農에 붙이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⁵³⁾ 안중섭도 東伍와 守城軍 외에는 編籍하지 않고, 京營納 외에는 잡색군 명목을 일체 혁파하여 番上하는 경우를 없애면 자연히 호포제로 전환

48) 기정진은 1866년 조정에 올린 「丙寅疏」에서도 향촌에서 무예에 뛰어난 자는 시험을 보아 軍포를 면제하자고 주장하였다. (奇正鎮, 『蘆沙集』 卷3, 「丙寅疏」, “若有武藝出等者 官爲試才而免其身布”) 이를 통해 기정진이 호포제 실시에 찬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49) 기양연은 영조 때에 논의된 結布, 戶布, 游布, 口錢 중에서 結布는 田이 있으면 租가 있다는 것이고, 戶布는 戶가 있으면 庸이 있다는 것으로서 古法에 근거도 있고 모두 행할 만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奇陽衍, 『柏石軒遺集』 卷1, 「三政策」, “惟戶結二條 似有古法之可學者 結布者 則有田則有租之意也 戶布者 則有戶則有庸之意也”) 그런데 이것이 행해지지 못한 것은 양반들이 저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글, “臣竊聽於閭巷之談 傳聞於搢紳之間 則戶布之不行者 以東國所謂兩班沮之故也”)

50) 奇陽衍, 『柏石軒遺集』 卷 1, 「三政策」, “戶布之不行者 以東國所謂兩班沮之故也 此有一言可辨者 漢司隸校尉之子 尙未免躬戍之勞 則豈可以兩班而持難於戶布乎 自今以往 亟行此法 以除軍布而或專用戶布 或戶結參半 兩無不可 惟在聖慮之如何”

51)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先查兵部之正兵元額 而計戶均布 以資養兵之具 以各邑雜保 一竝汰沙 以紓民力 豈非救時之急務也”

52) 같은 글, “行我國之爲兩班者 必有攙貳 而此亦有不然者 定罷之初 已有收布之事 而不以兩班而見許 則迺可先祖父 固當供之矣”

53)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先數該邑之結戶 苟獨他役以當此番 以幾結幾戶 出軍幾名 則正兵可以丁壯也 收布可以饒實也 此亦非遇兵於農之意耶”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⁵⁴⁾

노사학과에서는 호포제 실시와 함께 군병의 사기를 높여 전투력 향상을 꾀하였다. 기정진은 군병들에게 군포를 파한 뒤 군병을 넉넉히 대우해 주어야 實兵을 얻고 陰雨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⁵⁾ 나도규는 속오군이 나 수군의 장정들이 대부분 노약자로서 군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였으며,⁵⁶⁾ 이최선 역시 군대 기피는 군병을 천시하고 가혹하게 부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군병에게 급료를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⁵⁷⁾

전투력 향상과 관련하여 강인회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었다. 강인회는 먼저 현재의 중앙이나 지방군 모두가 전투력을 상실한 군인들로 진단하였다. 서울의 군문에 있는 布料를 받는 군졸들은 市井의 雜隸에 불과하며, 군관들도 출세를 위해 직책을 얻은 자들에 불과하여,⁵⁸⁾ 이들이 전혀 전투력이 없다고 하였다.⁵⁹⁾ 지방의 鎭堡도 전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아전들이 국가의 把守의 布料를 축내고 있을 뿐 전혀 전투력이 없어 변란 시 모을 수 있는 자는 늙은 東伍軍이나 어린 手下軍을 索出하는 정도여서 적의 침입에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⁰⁾

이에 강인회는 정예병 육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군액이 과도하게 책정

54) 安重燮, 『蓮上集』 卷 6, 「三政策」, “一則東伍守城軍外 悉去編籍之法 更新前日之議 則上不損國 下無偏徵矣 二則京營納外雜色軍名一切查罷 則可以充軍籍減民瘼矣 借使充籍未盡 既無上番之規 只有納布之典 則渠自戶布者 可謂不令而行 又何必紛紛查括 徒增苦擾爲也”

55) 奇正鎮, 『蘆沙集』 卷 3, 「壬戌擬策」, “軍布既罷 又有以優假之 則實兵自此可得 實籍自此可立 陰雨自此可備矣”

56) 羅燾圭, 『德巖漫錄』 卷 7, 「三政策」, “以東伍水軍之壯丁 幾是老弱未勸之類也 不止於老弱而虛名過半”

57) 李最善, 『石田集』 卷 2, 「三政策」, “京軍之願入 利其料給也 鄉軍之謀避 以其剝割也 衣食之門一開 骨髓之恩皆徧 苟如是 豈憚軍籍之入乎”

58) 姜寅會, 『春坡遺稿』 「禦制三政策問」, “其所謂應受布料者 徒以市井雜隸 苟充一日之兒戲而已 富豪發身 虛設軍官之位號而已”

59) 강인회는 이러한 군관들이 심지어는 화살이나 탄환을 쓰지도 못하고 兵學에 대해 무지하고 군사 훈련시 旌旗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고 혹독하게 비난하였다.(같은 글, “甚至手不能放一矢以一丸 口不能談兵學辨旌旗 則此等所養用於何地乎”)

60) 같은 글, “其下鄉鎭堡……一朝變起 則只以片紙橫馳列邑 索出羸老之東伍 腐臭之手下軍 其何以成模樣而辦其備禦哉”

되었다고 비판하고, 소수의 정예병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1백만의 戶口 중에 군역을 지을 수 있는 자는 10명에서 3~4명을 넘지 못하는데, 兵部の 元額이 1백만 명에 가깝고 諸衛의 雜軍 명목이 3~4백 만을 넘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幼學으로 모략하거나 閒丁으로 투탁하여 그 부담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짐승되게 되니, 한 집 당 7~8명 혹은 개인당 4~5명 정도의 역이 부과되고, 黃口簽丁이나 백골징포 같은 군정의 폐단이 일어난다는 것이다.⁶¹⁾ 이에 강인회는 강개한 조정의 관리를 파견하여 원액 외에 부가된 군액은 전부 없애고 원액 자체도 과감하게 줄여주자고 하였다.⁶²⁾

강인회에 의하면 실제 전투에서는 3만 명 정도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만 명 정도면 어떠한 진법을 펼치더라도 문제가 없고 어떠한 적들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이에 강인회는 정예병을 양성하기 위해 무예가 절륜한 자들을 뽑아 서울의 軍門과 각 도의 鎭堡에 분산시켜 廩料를 주어 우대하자고 주장하였다.⁶⁴⁾ 이들 중 뛰어난 자는 軍職을 주고 또 그 자식에게는 軍試를 허락하여 部將으로 대우하면 힘과 기예가 뛰어난 자들이 즐겨 군병이 될 것이고, 京軍과 各鎭의 군사들이 갑절로 날래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⁶⁵⁾

61) 같은 글, “國家戶口 不過百萬 而除士大夫官衙驛卒僧徒之外 可以簽丁應軍者 將不滿十之三四 而兵部元額殆近百萬 則以三養十 其憊可知矣…… 今也則殆有甚焉 元額浮於古 而諸衛雜軍名目之不係於兵部者 不減於三四百萬矣 是皆責應於至窮之農民 而少奸黠稍要足者 率皆冒錄於幼學投託於閒丁 則農民之命 可謂頑矣 宜乎一室而對七八之役 一人而答四五之役 黃口之簽丁白骨之徵焉”

62) 같은 글, “爲今之計 先使湖堂名士有慷慨不撓屈者 搜出鎭堡郡邑之元額外 諸軍盡數太減 次將元額之可減可除者 一竝鏘除”

63) 같은 글, “數至三萬 則無不可布之陣 無不可破之敵”: 강인회는 주나라나 조조의 군사가 적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많아서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군사의 정예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같은 글, “紂非不多 而卒滅於周 八十萬衆 操非不夥而幾擒於吳 此其兵衆者 適足以自害而務精之訓 爲千古養兵之指南矣”) 그는 6만 명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呂尙이나 韓信, 諸葛亮 같은 재주가 있어야 이들을 부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같은 글, “至於六萬則以太多 而必有呂韓諸葛之才 然後乃可用也”)

64) 같은 글, “特抄其膂力絕人武藝超等之輩 或分隸於京城諸軍門 或散處於諸道各鎭堡 優其廩料 修其接待”

65) 같은 글, “或有可用之人 則敍軍歷付軍職而又使其子許赴軍試 如有入格者 不以軍名玷汚 而視如一之部將薦 則有力有技之道 皆樂爲兵 而京衙各鎭之軍 必一倍號健矣”

이러한 정예병 육성을 위한 재원에 대해 강인회는 농민들에게 結米나 結布를 거두고, 양반이나 부호들에게도 호포나 결역을 부담시키자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되면 백성들의 생활은 오히려 넉넉해지고, 兵力은 씩씩해져 不虞의 변란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⁶⁾

호포제 실시와 군사력 강화로 대표되는 노사학파의 주장은 1866년에 이르러 기정진에 의해 향촌방어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다. 기정진은 프랑스 등 서양세력의 침입의 조짐이 보이자 「丙寅疏」에서 서양 침략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면서 통상거부와 함께 이들을 격파할 방략을 제시하였다.⁶⁷⁾ 통상을 거부하는 조정의 계책을 정하고, 적에게 제시할 문서를 작성하여 반포하며, 지형을 살피서 육전에 대비하며, 군사를 조련하며, 널리 구연하며, 內修를 통해 인심을 결집시켜 外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⁶⁸⁾

이 중에서 군사적인 대책은 지형을 살피는 것과 군사를 조련하자는 것의 두 항목이다. 지형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물에서 이로운 자는 육지에서 이롭지 못하고, 평탄한 데서 이로운 자는 험난한 곳에서 이롭지 못하는 법이므로, 서양 세력은 물에 익숙하니 지형을 잘 숙지하여 이들을 육지에 끌어들이어 험준한 곳을 응거하여 요격하자고 하였던 것이다.⁶⁹⁾ 이러한 기정진의 험한 지세를 이용한 방어 전략은 당시 조정이나 지식인들이 육전 중심의 방어체제를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⁷⁰⁾

66) 같은 글, “古者養兵之策 皆責於農 則今亦以結米結布 斟酌酬應 可謂良策也 限田之制 如不設行則不耕遊食 亦係通惡 參半戶結 豈非得計乎 夫如是 則民力可寬 兵力可莊 雖有不虞之患 可以談笑 而制之矣”

67) 『蘆沙先生文集』卷3, 「丙寅疏」.

68) 같은 글, “其一 廟筭不可不先定 ……命中外官 搜括塵人所儲 洋物 焚之通衢 凡嗣後貿來者 施以交通外寇之律 亦定民志之一道 其二 先修辭令 …… 其三 審地形 …… 其四 鍊兵 …… 其五 求言 …… 其六 汲汲內修 以爲外攘之本 ……”

69) 같은 글, “其三 審地形 蓋利於水者 不利於陸 利於平坦者 不利於險阻 彼胡以水爲家 決難以水爭 兵機頃刻萬變 雖難鼓膠柱之瑟 若言其大致則制彼胡之法 恐不過據險邀擊四字 乞命中外將臣 先事審察地形 胡若登陸 庶無彷徨失措”

70) 노대환, 「朝鮮後期 西洋勢力의 接近과 海洋觀의 變化」, 『한국사연구』 123, 2003, 362~366쪽.

군사를 조련하자는 것에 대해 기정진은 먼저 군사력이 약화된 원인에 대해 진단하였다. 國俗이 문벌과 지위를 숭상하고 군적에 들어간 자와는 혼인을 하지 않을 정도여서 무를 경시하고 군적이 부실해진다는 것이다. 군적이 부실해지다보니, 매양 군사를 점고할 적에는 里正이 사람을 사서 점고할 뿐이며,⁷¹⁾ 병기는 각 읍의 官庫마다 쯤이 슬어 활을 당길 수도 없고, 화포는 追鹿軍이나 守管者들이 사사로이 도둑질해가고 남은 것은 火穴이 새거나 녹이 짝 차서 한 방도 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⁷²⁾

이에 기정진은 향촌단위의 방어체제를 역설하였다. 기정진의 향촌방어체제는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증강시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기정진은 고대에는 六藝 중에 射御가 포함되어 있어 군사력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쓸모없는 과거 글이나 익히고 집집마다 무기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⁷³⁾ 오랑캐들이 이 점을 알고 자주 쳐들어온다는 것이다.⁷⁴⁾ 따라서 기정진은 모두 신분에 관계없이 군적에 등록시켜서 각기 弓矢를 갖추고 각 고을의 모든 主戶로 하여금 촌민을 이끌고 향촌을 방어하자고 제안하였다.⁷⁵⁾

이들 중 무예가 출중한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관직을 주고 身布를 면제

71) 『蘆沙先生文集』 卷 3, 「丙寅疏」, “古之治兵 不過二塗 曰藏兵於農 曰募民爲兵 今日京營以外 未嘗不藏兵於農也 而文治成痼 武畧不競 且國俗有門地陋規 賤兵太過 一入軍籍 婚嫁不售 故平時逃避軍籍 如避死地 今日軍簿 皆是丐乞黃口 否則白骨虛名 每年軍點時 里正雇人受點而已”

72) 같은 글, “以言乎兵器 則各邑官庫所儲之弓 筋角蝕 不堪一彎 火砲則其可用者 皆爲追鹿軍與守管者循私盜出 其存者火穴傍漏 垢埃塞腹 不堪一放 以此對敵 則雖韓白摠兵 劉岳選鋒 不過輸血肉於賊虜而已 此藏兵之不足恃也”

73) 같은 글, “古昔聖王 爲陰雨之備 何其周盡也 禮樂者化民之大節目 而射御之末事 乃與並列而爲六藝 挽彊策壯 非八歲童子之所可能 而其文則自小學而預教之 鄉射之禮 與鄉飲而並行 乃至天子將祭 有澤宮之射 蓋折衝禦侮之意 默寓於其中 士之所習者如此 故一朝出身 可以捍王于艱 我國之隔民 可謂左矣 童習白紛 不越乎淫侈無用科場之文詞 而有用之六藝 不講其一焉 習而成俗 甚至十夫團聚 不帶剪爪之一刀 三家村落 元無剝雞之一刃 況其他乎”

74) 같은 글, “彼虜之蓄積於我已久 設使今季不犯越而自退 其勢早晚恐不免有一場交兵 此非賦詩所能退 長嘯所能却 必也大鑿一陣 殲厥醜類然後 蒼生可以息肩 宗社可以奠安 鍊兵豈可少緩乎”

75) 같은 글, “今宜以與民同仇之意 布告域中 使坊曲主戶各各自備弓矢 率村民而肄習之 以爲倉卒保其父母妻子之計”

하며, 또 이름이 군적에 없는 자는 무과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유업전 2개를 맞추지 못하면 문과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활을 잡을 줄 모르는 선비가 없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면 군사들이 정예화되어 나라의 위엄이 족히 萬里의 적을 꺾게 되어 저 교활한 오랑캐도 반드시 위협을 느끼고 감히 준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⁷⁶⁾

아울러 기정진은 서양의 무기에 맞설 방략도 수립하였다. 서양의 빠른 短砲에 맞서기 위해서 각 도의 營門에서 弓矢火砲를 제작하여 절반은 각 고을의 官庫에 비치하고, 절반은 값을 받고 향촌의 민간인에게 나누어 주어 훈련을 시키자고 하였다.⁷⁷⁾ 이처럼 향촌의 민간인들을 훈련시키면 백성들을 동요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미리 알리지 않아서 화를 당했다고 비판하고,⁷⁸⁾ 서양 세력이 조만간에 쳐들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민간에게 알리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그리고 향촌의 백성들이 무기를 소지하면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향촌에서 무기가 없을 때 양민을 해치고 간악한 사람을 금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박하였다.⁸⁰⁾

76) 같은 글, “若有武藝出等者 官爲試才而免其身布 且別爲令甲 使名不在兵籍者 不得赴武學 非柳葉箭二中 不得赴文試 若使環海數千里 無一不知操弓之士 則其威足以折衝萬里 狡虜必脅息而不敢動矣 不幸有事 精兵亦庶乎可得矣”

77) 같은 글, “竊聞彼之短砲甚捷 非短兵所可制 宜令各道營門 多造弓矢火砲 恣各官之上本價取去 以充官庫 其副則又以本價頒之民間 則鍊兵而不費國帑 治兵而不煩程督 愚臣淺慮莫過於此”

78) 같은 글, “或曰 此令若頒 則民情必一倍騷動 若之何 臣答曰 壬辰丙子 朝廷諱言兵亂 畢竟何益矣 聖主不諱亡 哲士不諱死 況此思患預防 豈死亡之比而可隱諱耶”

79) 같은 글, “又竊聞彼之短砲甚捷 非短兵所可制 宜令各道營門 多造弓矢火砲 恣各官之上本價取去 以充官庫 其副則又以本價頒之民間 則鍊兵而不費國帑 治兵而不煩程督 愚臣淺慮莫過於此”

80) 같은 글, “或曰 使民習兵 則將有潢池弄兵之患 奈何 曰此則西漢吾丘壽王已論之矣 禁民五兵 適足以害及良民 而不能禁姦民 必民不操兵而後 國家可安 則銷兵之秦 可以萬世矣”

4. 노사학과 군정개혁책의 의의와 한계

호포제 실시와 군사력 강화, 향촌단위의 방어체제로 대표되는 노사학과 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노사학과 군정개혁책은 1862년 임술민란이나 1866년 병인양요 때 군정개혁을 주장한 다른 유학자들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노사학파의 주장은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외적과 화친하지 말고 항전해야 했던 화서 이항로의 경우와 대비된다. 이항로는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방책으로 장수를 잘 선발하여 군사 준비를 하고, 八道에서 인망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號召使로 임명하는 대책을 제시하였다.⁸¹⁾ 이러한 이항로의 전략은 왜란이나 호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취해왔던 군사 정책을 반복해서 주장한 것으로서, 당시 조정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조정에서는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漢城府左尹 鄭圭應을 소모사로 임명하여 양화진에 나아가게 하였고,⁸²⁾ 호서에는 李容直, 호남에는 李觀淵, 영남에는 李彙載와 金禹銖, 황해도에는 李敏道, 평안도에는 鮮于滌, 강원도에는 李周夏, 함경도에는 馬行逸 등 전·현직 문무관을 召募使로 差下하여 의병을 규합하게 하였다.⁸³⁾ 또한 동북의 민주현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민주현은 병인양요 직후 소모사를 파견하여 도성에서 2만명, 팔도에서 각 1만 명을 모집하여 군사를 조련하자고 하였던 바,⁸⁴⁾ 당시 많은 유학자들이 지지하였던 대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항로나 민주현의 경우는 기정진처럼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요격하거나 향촌단위로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를 조련하는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한

81) 『高宗實錄』 3권, 高宗 3년 9월 12일, “選將繕武, 極用人望. 八道內, 各擇本道人望所歸者, 爲號召使, 假之以威權, 示之以尊寵”

82) 『高宗實錄』 3권, 高宗 3년 9월 9일.

83) 『高宗實錄』 3권, 高宗 3년 9월 11일.

84) 『承政院日記』 2709冊, 高宗 3년 12월 17일, “副司直閔胄顯疏略曰……臣愚以爲, 旣差召募, 都城二萬, 八路各一萬, 無事則安意作農, 農隙講武, 及其有事, 各守其道, 邊圉有備, 則外寇不敢窺矣”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1862년 임술민란 시 화서학과를 대신하여 제출한 유종교의 군정개혁책이나 민주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호포제는 신분제를 문란하게 하므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고서,⁸⁵⁾ 양반 사족을 제외한 평민층을 대상으로 동포제를 주장하였다.⁸⁶⁾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군정 개혁론에서 신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송시열의 후손으로서 병인양요 당시 대사헌을 지냈던 宋近洙는 국가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戶 단위로 분배하자고 하였고,⁸⁷⁾ 영남의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李震相도 軍戶 이외의 모든 戶에 대하여 戶賦로서 2냥씩을 내어 京番의 비용에 보태자고 하였다.⁸⁸⁾ 따라서 이들은 호포제 실시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외적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방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노사학과는 당시 유학자들과 비교하여 신분제 관계 없이 호포제 실시를 주장하고, 중국이 서양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는 상황 하에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둘째, 기정진이 주장한 향촌 단위의 방어 체제는 왜란 등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19세기의 관군의 전투력 약화를 극복하는 방책에서 비롯되었다. 기정진은 왜란과 호란 때의 호남 지역 의병운동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다. 왜란과 호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절의를 지킨 인물에 대해 기정진이 쓴 글이 서문과 발문만 해도 16편이나 된다.⁸⁹⁾ 기정진은 이러한 글을

85) 柳重教, 『省齋集』 44, 柯下散筆, 「三政策代伯王父作」, 壬戌七月. “至於戶布之法。則比結布差勝。但一例排定。則朝士儒生。混徵役布。於名無當。欲稍存揀別。則其欺詐規免之習。亦猶夫今日查丁之難也。此其所以不可行也” : 閔胄顯, 『沙涯集』 卷 3, 「三政對策」 哲宗壬戌六月, “本邑自數十年來 爲戶布之法 使班戶均當 此固出於不得已之情 而殊不知上下之無分紀綱之解弛 甚可寒心也……我國重土族 五百年來 無儒戶充丁之事 軍伍是小民之職也”

86) 유종교, 앞 글, “臣則以爲均布之法。未必別生新規。只得排洞均徵。使自調停而已也” : 민주현, 앞 글, “臣竊念 仍舊周審也 則名分紊亂矣 更爲歲抄也 則擾民甚矣 反覆思惟 不如且就小民中 使自爲周審 以爲正名分息騷擾之地 而庶可爲便民之方矣”

87) 宋近洙, 『立齋集』 卷 11, 「三政說」, “去其充填之籍 而統計一年之所收排戶 而通京外均收其布 則吏絕售奸之路 而民無偏苦之役矣” : 김용섭, 앞 글, 512쪽.

88) 李震相, 『寒洲先生文集』 卷 4, 策, 「應旨對三政策」 壬戌, “通計一邑還戶。各出二兩。以供京番之費。而軍戶不與焉” : 김용섭, 앞 글, 513쪽.

89) 기정진은 왜란이나 호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절의를 지킨 인물과 그 후손을 고무하는

작성하면서 “임진왜란 때 諸公이 없었다면 호남이 없었고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기초가 없었을 것이다”⁹⁰⁾ 라고 하여 왜란 때의 의병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왜란 때의 의병활동에는 관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천한 노비들까지 참여했다고 하여,⁹¹⁾ 신분에 관계없이 향촌 사회에서 의병이 일어나 외적과 맞서 싸운 것으로 이해하였다.

더욱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군사력이 약화되어 兵卒이나 軍器는 물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軍紀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 관의 군사동원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⁹²⁾ 이 때문에 정약용은 民堡를 설치하여 향촌민을 군대편성으로 조직화하여 훈련시키고, 이러한 민간자위체제를 상비국방전략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이 주장한 민간주도형의 향촌자위체제인 민보는 임란 의병을 보다 조직적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서,⁹³⁾ 1876년 조정의 備邊策으로 공인되기에 이르렀다.⁹⁴⁾ 왜란 때의 역사적 경험을 되새겨서 향촌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를 편성하고, 관에서 무기를 나누어주어 정병을 양성하려고 하였던 기정진의 주장은 이러한 향촌단위의 방어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19세기의 민보의 전통을 일정

많은 글을 남겼다. 『靈光金氏族譜序』, 『平澤林氏七忠事蹟序』, 『扶寧金氏族譜序』, 『日休堂實紀序』, 『晉州鄭氏族譜序』, 『晉州鄭氏族譜序』, 『健齋先生遺集序』, 『礪山宋氏波譜序』, 『南陽宋氏族譜序』, 『密陽朴氏波譜序』, 『金城丁氏波譜徐』, 『長興任氏族譜序』, 『咸平魯氏族譜序』, 『晉州鄭氏族譜序』, 『李忠莊公年譜跋』, 『珍原朴氏學義錄跋』 등 16편의 글이 바로 그러한 인물과 후손들에 관한 글이다. (『蘆沙先生文集』 卷19, 20, 24 참조)

90) 『蘆沙先生文集』 卷 24, 『珍原朴氏學義錄跋』, “壬癸之燹, 湖南所以完, 海上賴有露梁碧波, 陸則錦山晉州, 靡當時諸公則無湖南, 無湖南則國家之興恢無基矣”

91) 기정진은 고경명의 후손인 고계림의 저술을 평가하면서, 임란때에 어찌 사대부만 참여하였겠느냐고 반문하고 오히려 신분이 천할수록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더욱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의병의 후손 중에 어찌 몰락한 경우가 없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蘆沙先生文集』 卷7 『答高伯範(濟琳)』, “來示中 身役賤漢云云 此則不必成說 蓋當時赴義從軍者 豈必士夫 蓋有賤隸之願從者矣 苟其名帖 不虛則 地愈賤而人愈貴 況今數百年之後 子孫之流爲賤 何足怪乎”)

92) 鄭景鉉, 「19세기의 새로운 國土防衛論 - 다산의 《民堡議》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4, 서울대국사학과, 1978, 340쪽.

93) 같은 글, 364쪽.

94) 서태원, 「朝鮮後期 實學者의 防禦體制改革論」, 『실학사상연구』 28, 역사실학회, 2005, 51쪽.

부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노사학파의 군정개혁책은 전략적 측면에서 조선조 말 의병운동으로 계승되어 갔다. 주지하다시피 노사학파는 조정의 개화정책과 일제의 침략에 맞서 1896년과 1907년에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의병운동은 주리론의 입장에서 순정한 理와 도학적 전통을 수호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하였던 기정진 이래의 위정척사사상을 계승하여 일어난 것이다.⁹⁵⁾ 당시 기정진의 문인들은 일본군과 맞서 싸우면서 지형의 이점과 신분에 관계없이 향촌의 군사력을 동원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왜란 때의 역사적 경험과 기정진이 제시한 방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896년에는 기정진의 손자 기우만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기우만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견하고 유인석의 격문이 이르자 장성을 비롯한 담양, 창평, 광주, 순창 유생들과 함께 거의를 모의하여,⁹⁶⁾ 그는 격문을 전라도 각 고을에 보내어서 의병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武備가 잘 갖추어졌던 나주로 옮겨서 의병을 지휘하였다.⁹⁷⁾ 이 때 그는 나주, 장성, 창평, 광주, 함평, 능주, 무안 일대의 의병과 관속을 통솔하여⁹⁸⁾ 일제에 맞서고자 하였다. 이미 관군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향촌의 군사력을 모아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한 것으로서, 왜란 이후 호남의병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하였다. 영남에서는 기정진의 문인 鄭載圭가 삼가와 단성 일대의 군사력을 모아 진주의 鄭漢容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는데,⁹⁹⁾ 정재규 역시 기정진의 위정척사사상과 향촌방어전략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말에 이르러서는 노사학파에서 高光洵과 奇參衍에 의해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¹⁰⁰⁾ 고광순은 1907년 8월 4일 창평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동북과

95) 홍영기, 「호남의병의 관련자료와 사상적 배경」,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조각, 2004, 95~106쪽.

96) 김봉곤, 『蘆沙學派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7, 228쪽.

97) 홍영기, 「호남의병의 활동」,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조각, 2004, 133쪽.

98) 李炳壽, 『金城正義錄』 丙篇.

99) 朴敏泳, 「愼菴 魯應奎의 晉州義兵 抗戰 研究」, 『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 1991, 228쪽.

100) 홍영기, 「호남의병과 노사학파 의병 주도세력의 형성」,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

남원을 거쳐 지리산의 연곡사로 들어갔다.¹⁰¹⁾ 그가 동복과 남원을 간 것은 향촌에서의 군사력을 동원하고자 함이었으며,¹⁰²⁾ 연곡사는 동쪽 화개동에 수백 명의 포수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연곡사의 험준한 지세가 있어서 일본군을 요격하기에 좋았기 때문이다.¹⁰³⁾ 고헌순의 전략 또한 향촌의 군사력을 모아 외적에 대항하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기정진의 전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삼연 역시 향촌의 군사력을 모아 일제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이미 관군이 일제에 의해 무력화되거나 친일화 된 상황하에서 기삼연은 호남지역의 의병을 모아 싸우는 전략을 택하였다. 기삼연은 영광과 무장, 장성, 나주, 고창, 창평 등 전라도 서부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一心契를 바탕으로 의병운동을 모색하다가,¹⁰⁴⁾ 영광의 金容球와 李英華, 나주의 金準, 장성의 李哲衡, 함평의 李南奎 등의 의병 등이 합류해오에 따라 1907년 10월 30일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하였다.¹⁰⁵⁾ 주요 구성원은 장성, 고창, 영광 등 전라도 서부지역의 양반유생과 포수를 비롯한 많은 평민층 병사들이었다. 기삼연은 일본군에 맞설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령 산맥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장성과 영광, 정읍 일대의 포수들을 규합하였다.¹⁰⁶⁾ 또한 의병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에 의해 침탈되고 있었던 궁방이나 역둔토의 재정을 군자금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¹⁰⁷⁾ 그리고 고창의 문수사나 담양의 금성산성 등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¹⁰⁸⁾ 이러한 기삼연 의병운동의 전략은

조각, 2004. 95~105쪽

101) 『省齋奇先生學義錄略抄』 卷 3, 「義兵將高鹿川傳」(吳駿善撰)

102) 조동걸, 義魂으로 대를 잇는 昌平의병, 『독립군의 길을 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96쪽.

103) 『省齋奇先生學義錄略抄』 卷高3, 「義兵將高鹿川傳」(吳駿善撰), “遂盤據求禮之燕谷 蓋燕谷東通花開洞 洞有民砲數百 精銳可用 西有文殊洞 天險可恃”

104) 홍영기, 「호남의병의 활동」, 『대한제국기호남의병연구』, 일조각, 2004. 227쪽.

105) 같은 글, 229~231쪽.

106) 김봉곤, 『노사학파의 형성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7. 243~244쪽.

107) 『省齋奇先生學義錄略抄』 卷 2, 「廣告文」.

108) 기우만, 『松沙先生文集拾遺』 卷 2, 「湖南義士列傳」.

향촌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정과 군사력을 마련하여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왜란 이래의 역사적 경험과 기정진이 제시한 향촌단위 방어체제를 계승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학파의 의병활동은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전개되어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1896년 전개된 기우만의 의병운동은 장성과 나주 지역의 의병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선유사의 권유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다.¹⁰⁹⁾ 1906년에는 기우만이 태인의병을 이끌고 있었던 최익현과 담양의 추월산에서 회동하였으나, 결국 의병운동의 방략과 지휘권 문제로 의병운동의 연대에 실패하였다.¹¹⁰⁾ 그리고 1907년 기삼연 의병운동은 호남의병을 망라하고 향촌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나, 영광과 장성 일대의 전투에 머물렀다.

더욱이 1907년 근거지인 창평 일대를 떠나서 지리산으로 옮겨 장기적인 항전을 계획하던 고광순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점차 노사학파는 일제의 진압작전 때문에 향촌 방어전략을 포기하고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일제는 이미 1907년 8월 1일 한국군의 무장해체를 단행하고, 전국의 민간인이 소유한 총포 화기를 압수했으며, 본격적으로 의병활동을 진압하였다.¹¹¹⁾ 이 때문에 관군의 협조나 향촌민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산간 벽지로 물러서서 일본군을 기습하는 작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¹²⁾ 이는 기정진이 주장한 향촌별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정예화시켜 외적을 막아낸다는 향촌방어전략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학파는 일본군에 맞서 싸울만한 신식 무기 확보에 실패하였다.

109) 김봉곤, 앞 글, 228~231쪽.

110) 홍영기, 앞 글, 167~168쪽.

111) 박성수, 「정미의병」,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9, 408~425쪽.

112) 같은 글, 425쪽.

당시 의병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무기는 화승총이었다. 화승총은 사정거리가 10보에 불과하고 散彈이기 때문에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었다.¹¹³⁾ 포수 확보에 주력하였던 기삼연의 경우도 대부분 화승총이었으며, 그나마도 많은 의병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였다.¹¹⁴⁾ 이러한 상황하에서 신식 장총을 소지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일제의 국권침탈로 신식 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사거리가 짧은 무기로는 서양의 총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활이나 총을 만들어 민간에 보급하여 훈련시키고자 하는 기정진의 전술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강고해져 의병활동을 통해 향촌을 보위하려고 하였던 노사학파의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호남지역의 군정의 실태와 노사학파의 개혁책, 그리고 개혁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이래 양인층의 신분상승과 군총제의 실시로 군정이 갈수록 문란해졌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폐단은 더욱 극심해졌다. 호남지역의 경우도 순조 대에 각 지역이 향교나 서원의 학생, 각 아전들의 질청의 보속이나 질청의 경비 마련을 위한 계방촌의 명목으로 빠져 나가서, 빈곤한 백성들에게 황구침정이나 백골징포, 첩역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군정의 피폐함은 순조 9년과 10년의 가뭄, 헌종, 철종대의 契房의 확대 등으로 군역 외에도 환곡이나 왜마 값, 民庫, 각종 공물 등에서 면제시키는 경우가 늘어났고, 아전뿐만 아니라 관청, 군영에서도 광범위하게

113) 같은 글, 467쪽.

114) 홍영기, 앞 글, 244~245쪽.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부정은 빈부의 격차에 따라 군포 부담에서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서 부유한 자는 稷防이나 邑屬의 保率, 향청의 鄕任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빈곤층이 고스란히 군포를 바치게 된 것이다. 암행어사들은 이러한 군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를 없애자고 주장하였으나,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군사력의 약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당시 노사학파를 비롯한 호남 지역 지식인들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이루어 군포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 것과 총액제하에서 빈곤층에게 군포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동일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노사학파에서는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군역을 조사하여 군적을 바로잡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군병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은 도리상 옳지 못하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근본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戶布制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인회는 군역의 감축 외에도 정예병 육성을 주장하였다. 무예가 출중한 자를 뽑아 서울의 軍門과 각 도의 鎭堡에 분산시켜 廩料를 주고 정예병을 양성하자고 하였으며, 재원마련은 농민들에게 結米나 結布를 거두고, 양반이나 부호들에게도 호포나 결역을 부담시키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분에 관계없이 호포를 징수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노사학파의 군정 개혁책은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에 쳐들어올 무렵, 기정진에 의해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정진은 양반도 평민들과 함께 모두 군적에 올려서 弓矢를 갖추고 각 고을의 모든 主戶로 하여금 촌민을 이끌고 향촌을 방어하자고 하였다. 또한 서양의 빠른 短砲에 맞서기 위해서 각 도의 營門에서 공시화포를 제작하여 향촌의 민간에게도 나누어 주어 무기를 익히게 하여 군사력을 강화한 뒤 지형조건을 이용한 요격전을 벌이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사학파의 군정개혁책은 동시대의 다른 유학자들의 주장에 비해 신분에 관계없이 호포제 실시를 주장하고, 중국이 서양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는 상황하에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정진의 향촌 방어전략은 19세기 군사력의 약화 속에서 왜란 때의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19세기 정약용 등이 주장한 民堡의 전통을 일정부분 잇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사학파의 군정개혁책은 전략적 측면에서 조선조 말 의병운동으로 계승되어 갔다. 노사학파의 의병운동은 기정진의 주리론과 위정척사사상에 촉발되어 일어난 것이지만, 지형을 이용한 요격전과 향촌방어전략은 왜란 때의 역사적 경험과 기정진의 향촌방어전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우만은 1896년 장성과 나주 일대의 향촌군사력을 모아 일제에 대항하고자 하였고, 고광순과 기삼연은 1907년 지형적 이점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일제와 맞섰다. 특히 기삼연의 전략은 향촌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정과 군사력을 마련하고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것으로서 기정진이 마련한 방어 전략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학파의 의병활동은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지역적으로만 전개되어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일제의 진압작전 때문에 1907년 이후 향촌 방어전략을 포기하고 신식무기 확보에도 실패하였다. 이에 서양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여 향촌별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정예화시켜 외적을 막아낸다는 기정진의 향촌방어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미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강고해져 의병활동을 통해 향촌을 보위하려고 하였던 노사학파의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3. 28, 심사수정일 : 2012. 5. 15, 게재확정일 : 2012. 5. 18)

주제어 : 군정, 임술민란, 노사학파, 호포제, 군사력, 기정진, 왜란, 향촌, 의병, 유격전

<ABSTRACT>

Nohsa Scholar Faction's Attempt at Military Reforms

Kim, Bong-gon

Honam region, upon entering the 19th century, not unlike the rest of the country was faced with serious corruption within the military administration. The degradation of official discipline and the crumbling caste system led to a great number of people gaining immunity from conscription which resulted in increased burdens upon the poor to pay off their conscription duties. Pervasive laxity among military administration officials was constantly pointed out by royal undercover agents of the time with demands for improvement.

With the Imsul insurrection in 1862, Nohsa scholar faction proposed a series of military reform measures. They proposed suggest a realistic re-evaluation of the required military force with the household tax regardless of status and bringing up elite troops, lest military strength should weaken. Nohsa scholar faction's military reform measures led to Ki Jeong Jin's insistence on across-the-board military reforms directed against the French invasion of 1866. Ki Jung Jin stressed that Yang-bans as well as commoners should be enlisted and armed with bow and arrow. Ki also would have the heads of household in each village lead the villagers and protect their own districts. In order to counter the fast loading short cannons of the West, Ki suggested cannons along with bows and arrows be produced at the military camp site in each province and distributed to the county depot. Also, Ki would have even civilians carry weapons and learn to use them. This would strengthen the military which then would incorporate interception tactics using topographic knowledge of the region. Ki Jeong Jin's county scale defense strategy had been the result of the close analysis of the volunteer fighters' actions in the Honam region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Ki Jeong Jin's strategic plans were to lay the ideological groundwork for Ki Wu Man, who mustered the military forces of the Naju area to counter the Japanese in 1896. This tradition would continue through Ko Gwang Sun and Ki Sam Yeon, during the last days of the Daehan Empire, who organized volunteer fighters regardless of class and status, while bringing up professional soldiers and artillerymen to engage in guerrilla warfare against the occupying Japanese forces.

Key Words : Military Administration, Imsul insurrection, Nohsa Scholar Faction, Military Strength, the Household Tax, Ki Jeong Jin, the County, the Japanese Invasion, the Volunteer Fighter, Guerrilla Warfare